

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- 69호

## 2022년도 제4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2년도 제4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13일

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 선발예정인원

(단위 : 명)

시험명	직급	직렬	직류(분야)	선발예정인원	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	
<b>총 계</b>				<b>69</b>		
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 (7·8·9급)	7급	수 의	수 의	14	성남 1, 화성 1, 평택 2, 광명 1, 포천 2, 양평 2, 여주 1, 동두천 2, 가평 1, 연천 1	
		약 무	약 무	3	경기도 1, 부천 1, 동두천 1	
	8급	환 경	수 질	4	남양주 2, 군포 1, 이천 1	
	9급	의료기술	의료기술	임상병리	4	남양주 1, 광명 1, 포천 1, 여주 1
				방 사 선	1	이천 1
				물리치료	1	남양주 1
				치과위생	1	양주 1
		환 경	수 질	수 질	8	안산 1, 평택 1, 광명 2, 구리 1, 양평 2, 연천 1
				대 기	5	광명 3, 양주 1, 연천 1
				폐 기 물	4	평택 1, 광명 1, 포천 2
	시 설	교통시설	6	광명 2, 양주 1, 이천 2, 여주 1		
		도시교통설계	1	이천 1		
	운 전	운 전	17	수원 5, 성남 1, 부천 1, 안산 3, 광명 3, 이천 2, 포천 1, 성남시의회 1		

※ 「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」(행정안전부예규 제185호)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시험에서는 '양성평등 채용목표제'가 적용되지 않음

## 2 시험과목

시험명	직급	직렬	직류(분야)	시험과목	
제4회 경력경쟁 임용 시험 (7·8·9급)	7급	수 의	수 의	수의미생물학, 수의보건학, 수의전염병학	
		약 무	약 무	화학개론, 약제학, 약전학	
	8급	환 경	수 질	환경공학개론, 화학, 환경보건	
	9급	의료기술	의료 기술	임상병리	생물, 공중보건, 의료관계법규
				방 사 선	
				물리치료	
				치과위생	
		환 경	수 질	환경공학개론, 화학, 환경보건	
			대 기	환경공학개론, 화학, 지구과학	
	폐 기 물		환경공학개론, 화학, 환경보건		
시 설	교통시설	물리, 교통공학개론, 교통계획			
	도시교통설계				
운 전	운 전	사회,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			

## 3 시험방법

가. 제1·2차 시험(병합실시) : 선택형 필기시험 (과목별 20문제, 4지택1형)

○ 시험시간은 과목별 20분(1문항 1분 기준)입니다.

시험명	직급	시험과목	시험시간
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 (7·8·9급)	7·8·9급 (운전9급 제외)	3과목	60분 (10:00 ~ 11:00)
	운전9급	2과목	40분 (10:00 ~ 10:40)

○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 실시 예정이며,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.

나. 제3차 시험 : 서류전형[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(자격·경력 등) 심사]

다. 제4차 시험 : 면접시험[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]

라. 합격자 결정방법 :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

※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(<https://www.moleg.go.kr>)를 참고

## 4 응시자격

가. 응시결격사유 등 :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(면접시험) 시행예정일(최종일) 현재를 기준으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제66조(정년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### 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 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

-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### ▶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 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 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▶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   - 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    -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    - 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    - 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    - 마. 삭제
    - 바. 삭제
    - 사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    - 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    - 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 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**나. 응시연령**

시험명	직급	응시연령	해당 생년월일
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 (7·8·9급)	7급	20세 이상	2002. 12. 31. 이전 출생자
	8·9급	18세 이상	2004. 12. 31. 이전 출생자

**다.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(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)**

시험명	직급	직렬	직류(분야)	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	
제4회 경력 경쟁 임용 시험 (7·8·9급)	7급	수 의	수 의	수의사	
		약 무	약 무	약사, 한약사	
	8급	환 경	수 질	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내지 2급	
	9급	의료기술	의료기술	임상병리	임상병리사
				방 사 선	방사선사
				물리치료	물리치료사
				치과위생	치과위생사

시험명	직급	직렬	직류(분야)	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
제4회 경력 경쟁 임용 시험 (7·8·9급)	9급	환경	수질	<b>【안산, 광명, 구리, 연천】</b> 기술사 :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산림, 농화학, 해양, 수산양식, 수질관리, 광해방지 기사 : 해양환경, 해양자원개발, 수산양식, 수질환경, 광해방지, 산림 산업기사 : 산림, 해양조사, 수산양식, 수질환경  <b>【평택, 양평】</b>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내지 3급
			대기	기술사 : 산림, 대기관리, 소음진동, 지질 및 지반, 기상예보 기사 : 대기환경, 소음진동, 응용지질, 기상, 기상감정, 산림 산업기사 : 산림, 대기환경, 소음진동
			폐기물	기술사 : 화공, 상하수도, 산림, 농화학, 원자력발전, 방사선관리, 산업위생관리, 폐기물처리, 토양환경, 광해방지 기사 : 화공, 원자력, 에너지관리, 산업위생관리, 폐기물처리, 토양환경, 광해방지, 산림 산업기사 : 산림, 에너지관리, 산업위생관리, 폐기물처리
		시설	교통시설	기술사 : 토질 및 기초, 토목품질시험, 토목구조, 도로 및 공항, 철도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지질 및 지반, 건설안전, 교통 기사 :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응용지질, 건설안전, 교통 산업기사 :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조경, 지적, 건설안전, 교통
			도시교통설계	기술사 : 토질 및 기초, 토목품질시험, 토목구조, 도로 및 공항, 철도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지질 및 지반, 건설안전, 교통 기사 :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응용지질, 건설안전, 교통 산업기사 :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조경, 지적, 건설안전, 교통
운전	운전	<b>【안산, 광명, 이천, 포천, 성남시의회】</b> 1종 대형운전면허  <b>【수원, 성남, 부천】</b>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		

(1)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(자격증·면허증) 관련 공통 유의사항

- 응시에 필요한 자격·면허 취득여부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.
-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·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(면접시험) 시행예정일(최종일)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.  
 ※ 시험 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·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 받을 수 있음
-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자격·면허 소지(유효) 여부는 자격·면허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·면허 발급(취득)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.

**(2) 운전직렬(수원, 성남, 부천 응시자에 한함) 자격요건 추가 유의사항**

- 대형버스 규격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1] 대형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릅니다.  
(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, 차량의 길이·너비·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 
길이 9미터 이상) ※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 가능
- 군(軍)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이후의 경력만 인정  
되며, 군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근무경력 인정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(경력증명서 등)를 기준으로 서류전형  
위원회에서 심사·결정하며,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 
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 
※ ‘경력의 계산’은 최종시험(면접시험) 시행예정일(최종일) 기준임

**○ 제출서류 ※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**

-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: 사업자등록업체에서 발행 (붙임3 서식 사용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<https://www.nhis.or.kr>)에서 발급
- 운전경력증명서 : 경찰서 또는 정부24에서 발급

**라. 거주지 제한**

**○ 2022년도 제4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 
아래의 1번 또는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**

1.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(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) 최종시험  
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 
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
2.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 
총 3년 이상인 자

**< 공통적용사항 >**

-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“개인별주민등록표”를 기준으로 함
- 행정구역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
-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 
이상이면 충족함 [잔여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]
-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 
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

**○ 단, 수의7급·약무7급·환경8급(수질)은 거주지 제한 없음**

## 5 문제출제

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모든 과목 시험문제는 **경기도 자체 출제문제로 시험문제를 비공개하며,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.**

※ 시험종료 후, 문제책 회수

## 6 시험일정

시 험 명	응시원서 접수기간 (기간 중 항시 접수가능)	구 분	시험장소 공 고 일	시 험 일	합격자 발표일
제4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(7·8·9급)	10. 11.(화) 09:00 ~ 10. 13.(목) 18:00 [ 취소마감일 : 10.16.(일) 24:00 ]	필기시험	11. 4.(금)	11. 12.(토)	12. 5.(월)
		면접시험	12. 5.(월)	12. 15.(목) ~ 12. 16.(금)	12. 28.(수)

-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시험장소 공고,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(<https://www.gg.go.kr>)에 공고하며,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를 통해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. (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확인기간 별도 안내)

## 7 응시원서 접수 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### 가. 접수방법 및 시간

- (1) 접수방법 :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※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(☎1522-0660)로 문의

※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 (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) 하여야 하며,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

- (2) 접수시간 : 접수기간 내 항시 접수가능 (2022. 10. 11.(화) 09:00 ~ 10. 13.(목) 18:00)

※ 마감시간(10.13.(목) 18:00)에 임박하여 접수하는 경우, 시스템오류 등의 문제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(3) 기 타 : 응시수수료(7급 : 7,000원 / 8·9급 : 5,000원)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(휴대전화 결제, 카드 결제, 계좌이체비용 등)이 소요됩니다.

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

나. 응시수수료 환급 :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액 환급됩니다.

- (1) 일부환급 :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(과오납한 금액 환급)
- (2) 전액환급
  -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
  - 응시원서 접수기간이나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

다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- (1)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(2)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(JPG, 해상도 100dpi이상, 3.5cm×4.5cm)이 필요합니다.
  - ※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, 모자·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
- (3)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
  - ※ 원서접수기간 중 결제완료 이후 시험 직렬(직류)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제 취소 후 원서작성 및 응시 수수료 결제를 다시 해야 함
- (4)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,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(<https://local.gosi.go.kr>)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.
- (5)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
## 8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

가.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10%	·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·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'나~라' 참고
의사상자 등	과목별 만점의 3% 또는 5%	

※ 이번 시험의 모든 모집단위(직렬)는 자격(면허)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므로 자격(면허)증 보유에 따른 가산점은 적용(부여)되지 않음

**나. 취업지원대상자 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)**

- (1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5% 또는 10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(2)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(기관별·직급별·직류별)로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  
 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에서 확인

**다. 의사상자 등 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)**

- (1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4조의2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3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(2)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(기관별·직급별·직류별)로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  
 ※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(☎044-202-3255)에서 확인
- (3)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가 ‘나’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합니다.

**라.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**

- (1) 필기시험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**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**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(<https://local.gosi.go.kr>)에 자격증 정보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(2) 가산점 등록기간 및 시간

등록기간	비 고
2022. 11. 12.(토) 09:00 ~ 11. 15.(화) 18:00	기간 중 항시 등록 가능 ※ 마감일 18:00까지 필히 등록요망

(3) 가산점 등록대상 및 입력사항

등록대상	등록사항
취업지원대상자, 의사상자 등	취업지원대상자(의사상자 등) 여부, 보훈(증서)번호, 가점비율

※ 관련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,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9 응시자 유의사항

- 가. 응시자격 및 거주지제한 사항의 '**최종시험 시행예정일**'은 **면접시험 최종예정일**을 의미합니다.
- 나.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자격미비자의 응시, 거주지제한 미확인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,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따라,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(경력, 자격증 등)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- 라. 필기시험에서 과락(각 과목 만점의 40% 미만 득점하거나 총점의 60%미만 득점)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, 그 밖의 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마. 이번 시험의 모든 과목 시험문제는 **비공개**하며,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.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바. 필기시험 장소는 응시자가 지원한 임용예정기관 소재지의 학교가 아닐 수 있으며, 응시인원 규모 및 시험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시자별 시험장 배정이 이루어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사. 필기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를 통해 면접등록을 하여야 하며, 면접등록을 하지 않거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아. 필기시험 성적조회는 실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한하여 지정된 열람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  
※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필기시험 성적조회 열람기간 공고
- 자.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**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(전보)할 수 없습니다.**  
※ 임용예정기관 '경기도'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,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경기도청 (수원 소재), 경기도청 북부청사(의정부 소재), 경기도청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며, 그 외 시·군 또는 지방의회의 경우 해당 임용예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차.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해당 및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등의 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카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3조의2(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)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**준용되지 않습니다.**
- 타. 자원봉사실적은 해당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만 인정합니다.  
※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, 대상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제출기간에 봉사실적 인증서·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
※ 헌혈도 자원봉사실적으로 제출 가능(원서접수 마감일 기준, 최근 2년 이내 기간 동안 헌혈자 본인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헌혈 1회당 4시간 / 연간 최대 20시간 인정)  
※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([www.vms.or.kr](http://www.vms.or.kr)), 1365 자원봉사 포털([www.1365.go.kr](http://www.1365.go.kr)) 등에서 출력한 인증서 유효, 봉사일자·장소·내용·시간이 명기되고 해당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도 유효  
※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에 따라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무보수성·공익성·비영리성·비정파성·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(인정불가 사례 : 물품 및 현금 기부·후원, 종교 활동, 졸업 및 성적요건 충족을 위해 수행한 봉사 등)
- 파.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**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**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**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**
- 하.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 본 공고문은 경기도 홈페이지(<https://www.gg.go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(☎031-8008-404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